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건설기계 통행 제한
및 교통안전요원 신설 등〉

■ 김승수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010호)

2024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서 기 영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교통안전요원 신설(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)	4
2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 (안 제12조제1항 등) 1. 교통안전요원 신설(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)	7
[참고] 영국 ‘학교 등하교 교통정리원(School Crossing Patrols)’ 운영 사례	11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승수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4. 08. 20.
3. 회 부 일 : 2024. 08. 2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.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또한,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등교·하교 교통지도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보행안전을 보다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

사람을 이 법에 따른 ‘교통안전요원’으로 정의하고,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, 안 제12조제1항 등).

현행	개정안
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)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 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.	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나목에 따 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으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 를 하는 사람(이하 “교통안전요원” 이라 한다)
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, 차마 또 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 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(이하 “경찰 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	② ----- ----- ----- -----경찰 공무원, 경찰보조자 또는 교통안전 요원----- -----

률」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최근 5년(2019년~2023년)간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515건, 그 부상·사망 어린이 수는 연간 545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해당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건수(가중처벌 시간대, 08:00~20:00)는 2019년 146만 4,393건에서 2023년 526만 4,042건으로 약 3.6배의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¹⁾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지도활동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<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및 속도위반 현황>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
사고(건)	567	483	523	514	486
사망(명)	6	3	2	3	2
부상(명)	589	507	563	529	523
속도위반(건)	1,464,393	1,597,343	3,413,290	5,013,133	5,264,042

자료: 경찰청

이에 개정안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나목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²⁾ 교통안전요원으로 현행법에

1) 동 기간(2019~2023년)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는 1,447대에서 11,256대로 약 7.8배 증가

2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5. “교육활동참여자”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나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·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

규정하고, 현행법 제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보조자와 같이 교통 신호·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무원등(경찰공무원·경찰보조자)의 신호·지시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,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사소한 신호·지시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, 신호·지시 권한자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특히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는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,³⁾ 「교통사고처리특례법」에서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·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자 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⁴⁾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.

3)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

1.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2.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 (안 제12조제1항 등)

개정안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
굶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1.5톤 가량의 중량물을 옮기려던 중 초등학교
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참사⁵⁾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
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
의 통행을 제한하려는 취지임.

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종별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살펴
보면 건설기계는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 건수는 적지만 어린이에게 치
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4)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

제5조제3조(처벌의 특례)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(業務上過失致傷罪) 또는
중과실치상죄(重過失致傷罪)와 「도로교통법」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
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(公訴)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
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
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(遺棄)하고 도주한 경
우, 같은 죄를 범하고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(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
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
여 운전한 경우

- 5) 「부산 초등생 등굣길 참변...“지게차 기사 ‘무면허’ 운전」 (KBS뉴스/ 2023.05.02.<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7665738>)

<최근 3년간 차종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>

구 분	2021년			2022년			2023년		
	사고(건)	사망(명)	부상(명)	사고(건)	사망(명)	부상(명)	사고(건)	사망(명)	부상(명)
계	523	2	563	514	3	529	486	2	523
승용차	383	0	401	361	2	372	343	1	372
승합차	14	1	15	29	0	29	27	1	31
화물차	40	1	58	32	0	34	43	0	47
특수차	0	0	0	0	0	0	1	0	1
이륜차	70	0	73	66	0	67	46	0	46
자전거	8	0	8	9	0	9	14	0	14
개인형 이동수단	7	0	7	10	0	11	9	0	9
건설기계	0	0	0	2	1	2	0	0	0
불명	1	0	1	5	0	5	3	0	3

자료: 경찰청

이에 개정안은 현행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, 원동기장치 자전거(“자동차등”) 및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 외에 등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⁶⁾는 시·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

6) 「도로교통법」

제6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① 시·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(區間)을 정하여 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경찰청장은 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있도록 하고 있으며,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(자동차등)와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7)에서는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로 건설기계, 덤프트럭 등을 포함한 차마(車馬)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.⁸⁾

다만, 현행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차마(車馬)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⁹⁾,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린이 보호구

7)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

제9조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 ① 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차마(車馬)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
2.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
3.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
4. 이면도로(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)를 일방통행로로 지정·운영하는 것

8)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672개소('23.8.기준)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차제 또는 전일제로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량등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실시 중이라고 함.

9) 「도로교통법」

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
역 내에서도 다른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344

에 따른 도시공원
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3의2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②~③ 생략

※ 참고 – 영국 ‘학교 등하교 교통정리원(School Crossing Patrols)’ 운영 사례

- ‘1953년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법(School Crossing Patrols Act 1953)’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학습자가 학교에 등교와 하교를 할 때 건너는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
- 이후 ‘1960년 도로교통법(Road Traffic Act 1960)’ 47조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를 위한 방식(Arrangements for patrolling school crossings)를 적용하며 잉글랜드 및 웨일스, 스코틀랜드도 시행
-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은 각 지자체가 유급직으로 고용한 사람이거나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원봉사자로, 지자체는 교통정리원을 지명할 때 적절한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, 교통정리원에게 필요한 연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의 정지 사인에도 차를 정차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 파운드(약 142만 원)의 벌금 부과, 벌점 3점 부과 또는 면허취소 등 가능

※ 등하교 교통정리원의 복장과 교통정리 신호

			
보행자가 건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	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방지	보행자가 건널 준비가 되었으므로 차량은 반드시 정차 준비	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할 것